#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 박용진 · 이소영 · 박 정

정성호 · 이학영 · 정춘숙

전용기 · 민병덕 · 기동민

용혜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 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 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 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 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 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3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① 제429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 또는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차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3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43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
	<u>익의 산정) ① 제429조의2에</u>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
	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
	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
	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을 모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을 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정한다. ②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는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자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따른 가격변동분을 입증하경우에는 제1항의 차액에 반하여야 한다.